

#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2,571,802,659	77,154,080
일반회계	2,333,721,783	70,011,653
특별회계	238,080,876	7,142,426
공기업특별회계	182,845,964	5,485,3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045,720	2,581,3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6,800,244	2,904,007
기타특별회계	55,234,912	1,657,0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446,905	403,407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314,000	69,4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565,924	46,978
교통사업특별회계	36,568,483	1,097,054
대지보상특별회계	5,000	150
수질개선특별회계	1,259,000	37,7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5,600	2,268

제 2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으로 한다.

제 6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637,61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일반회계 지방채한도액은 『10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